

아래와 같이 **10년 이상 무사고**로  
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선발하여  
**무사고운전자증**을 수여하고자 하니  
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 
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 2026년 제46회 무사고운전자 선발공고

**신청기간**  
 2026. 1. 19.(월) ~  
 2. 27.(금) 「40일간」

**신청 접수처**  
 가까운 경찰서 민원봉사실

## 신청대상(선발기준)

### 가. 신규신청

2025. 12.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

- (1) 10년 이상(2025. 12. 31. 기준, 역산) 교통사고(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·무면허·조치 불이행 물적피해 교통사고, 마약운전)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
- (2) 표시장 신청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(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)된 사실이 없는 자  
 ※ 물적피해 가해운전자는 선발대상자에 해당이 되나, 교통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누산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제외함.
- (3)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해당됨  
 ※ 특수차의 경우 등록기준 사업용 번호판이면 해당됨

### 나. 제외대상

- (1)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구급차·대여차(렌터카)·구난차·견인차,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(덤프트럭 등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해당),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(특별용도로 제작된 차량으로 이동정비차량, 캠핑카 등)
- (2)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,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운전이 종사하지 않은 사람
- (3) 기타 결격자

## 제출서류

- 가.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1부
- 나.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(운수회사, 조합 발급)  
 또는 사업체별 경력증명서(운수회사, 조합 발급)

## 표시장 구분

구 분	표시장의 종류	비 고
30년이상 무사고	교통 안전 장	표시장 종별에 따라 별도 수여
25년이상 무사고	교통 삼 색 장	
20년이상 무사고	교통 질 서 장	
15년이상 무사고	교통 발 전 장	
10년이상 무사고	교통 성 실 장	

## 참고사항

- 가.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, 선발기준일(2025. 12. 31.)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
  - 나. 운전경력증명(취업확인서)는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(조합)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(조합)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 
 ※ 운수회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, 인터넷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입·퇴사 기록 확인서를 제출하여도 됨
  - 다.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
 (예시 : 이천이십사년오월이십일로 표기)
  - 라.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,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
- ※ 자세한 사항은 시·도경찰청(교통안전계) 또는 경찰서(민원봉사실, 교통조사계, 교통관리계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